



이슈 보고서

Governance Issue

20230912

강영기 책임연구위원

02-769-3909

Youngki.kang@daishin.com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따른 대응방안

I. ESG 정보공시 의무화 관련 최근 동향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되는 ESG 정보공시 의무화 동향을 보면, 기업들의 자율적인 개선노력과 실천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유도한다는 본래의 ESG 정보공시제도 목적과 달리, **제도권을 통한 타율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ESG 공시가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일본과 미국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지속가능성보고서가 아닌 사업보고서 공시 강화로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속고가 필요함

II. ESG 정보공시 관련 일본의 대응 사례(타율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도쿄증권거래소는 일본 상장회사의 ESG 정보공시 관련 검토 포인트를 소개하는 **「ESG 정보공시 실천 핸드북」(연성규범 성격)**을 구체적 관점에서 해설하는 동영상 콘텐츠, 기관투자자의 ESG 투자 정보, ESG 평가기관 및 공시형태 관련 정보, 공시 사례 등 중심으로 ESG 정보공시 관련 최신 정보를 「JPXESG Knowledge Hub」에서 제공함. 이는 타율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방식이며, 기업의 ESG 경영 추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III. 시대의 조류인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따른 대응방안

기업의 지속가능한 ESG 추진이 가능하려면 연성규범의 형태로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고, 유관기관 및 기업간의 적극적 소통으로 기업의 자율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함. 한편,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는 검증기준 5000 '지속가능성 보증업무의 전반적인 요구사항' 제정을 추진해 2023 년 하반기 공개초안 공표, 모든 이해관계자와 아웃리치(소통) 등을 실시한 후에 2024 년 9 월까지 최종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회계사윤리기준심의회(IESBA)는 지속가능성 보고 및 보증을 위한 글로벌 윤리 및 독립성 기준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ESG 보고서 제 3 자 검증기관 적격성 관련 검증자격 부여제도를 국가 주도로 정비한다면, ESG 정보공시를 타율적 공시체제가 아닌 자율적 공시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I. ESG 공시 의무화 관련 최근 동향

1. ISSB의 공시기준 발표 이후 주요국의 반응

IFRS 산하기관인 ISSB는 전세계 통용 가능 ESG 공시기준 마련을 목표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 후 2023년 6월 26일 최종안을 확정 발표함. 최종안에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기후정보기준위원회(CDSB), 가치정보재단(VRF) 등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기관들의 기준을 수용하였고, 2025년부터 IFRS를 준용하는 기업들은 ISSB 공시기준을 반영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해야 함.

한편, ESG 공시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과 미국에서는 ESG 의무공시 도입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고¹, 한국 또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를 1년 유예하여 2026년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산업계(경영자총연합회)의 요청이 있었음.²

2. ESG 공시 의무화 관련 국내 기업들의 인식(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100개 국내기업 ESG 담당 임직원 대상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56%임³

구분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비율
기업규모별 의무화 시점	2026년 이후로 공시 의무화 일정 연기하고 일정기간(2-3년) 책임면제 기간 설정	56%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25년부터, 나머지 상장사는 2030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코스닥 기업은 제외해야 한다는 기준안 지지	27%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은 2027년부터로 앞당기고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닥 기업도 포함하자는 의견	14%
자율공시현황	ESG 자율 공시를 실행 중인 기업	53%
	ESG 자율 공시를 준비 중인 기업	26%
	ESG 자율 공시를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기업	21%

II. ESG 정보공시 관련 일본의 대응 사례(타율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도쿄증권거래소는 일본 상장회사의 ESG 정보공시 관련 검토 포인트를 소개하는 「ESG 정보공시 실천 핸드북」을 구체적 관점에서 해설하는 동영상 콘텐츠, 기관투자자의 ESG 투자 정보, ESG 평가기관 및 공시형태 관련 정보, 공시 사례 등 중심으로 ESG 정보공시 관련 최신 정보를 「JPXESG Knowledge Hub」에서 제공함.

1 정승환, "기업 부담 지나쳐...美·日 'ESG 공시 의무화' 신중", 2023.8.23. 매일경제 기사

2 최훈길, "[생생확대경] ESG 공시 의무화, 서두를 일 아니다", 2023.9.12. 이데일리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0326635739464&mediaCodeNo=257> 2023.9.12. 최종방문

3 성상영, "기업들 "가이드라인도 없는데"...ESG 의무 공시에 한숨", 2023.8.27. 이코노믹데일리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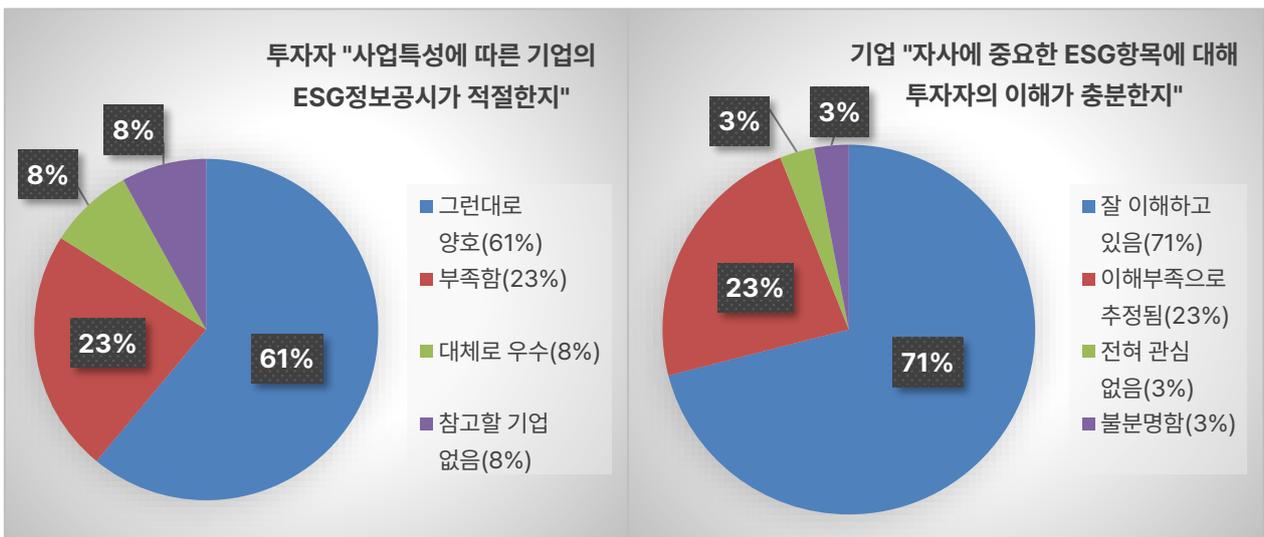
정용철, "대한상의 "국내 기업, ESG 공시 중요성 알지만 의무화 연기 필요"", 2023.8.28. 전자신문

도쿄증권거래소 ESG 정보공시 실천 핸드북의 개요	
목적	중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평가 시 ESG 를 통한 투자판단이 늘어나고 상장회사도 ESG 관련 대책과 정보공시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이 만든 ESG 정보공시 표준·기준, 프레임워크, 가이드스가 존재하는데, 기업들이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함
특징	ESG 과제와 기업 가치를 결합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중시하여, 개별회사가 ESG 관련 정보공시를 위한 검토 포인트를 자율적으로 참조하도록 4 단계(Step1 은 ESG 과제와 ESG 투자, Step2 는 기업전략과 ESG 과제의 관계, Step3 은 감독과 집행, Step4 는 정보공시와 참여)로 정리
	투자 판단에 유용한 정보공시 촉진을 위해 투자자 관점(중요과제의 특정과 기업 전략과의 연계 등)을 포함
	상장회사의 ESG 정보 공개 시에 참고할 기존 정보공시 틀(SSE 가이드스, TCFD, SASB, 가치협력 가이드스 등)과 이를 이용한 기업의 공시 사례를 소개

2022 년 3 월 30 일 공표된 「JPX-QUICK ESG 과제 해설집」은 「ESG 정보공시 실천 핸드북」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일본 기업들이 직면한 상황을 토대로, 글로벌 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는 각 ESG 과제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관점에서 해설함.⁴ 이러한 콘텐츠 덕분인지 일본은 자율적으로 통합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이 다수임.

한편, 다음 그림(2022 년 8 월 22 일 일본 ESG 정보공시연구회 설문조사 결과⁵)과 같이 일본은 ESG 정보공시 관련하여 투자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제공하고 있어서, 강행규범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간 약간의 인식 차이들을 좁힐 수 있는 여지가 많음.

일본 ESG 정보공시연구회 설문조사 결과



4 上場会社の取組み支援 - ESG 情報開示のサポート

<https://www.jpx.co.jp/corporate/sustainability/esg-investment/support/index.html>

5 宇野 麻由子, "企業と投資家で認識にギャップ-ストーリー-描出に工夫の余地", 日経 ESG News, 2022.8.22.

<https://project.nikkeibp.co.jp/ESG/atcl/column/00005/081500245/?P=2> 2023.9.8. 최종방문

III. 시대의 조류인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따른 대응방안

1. 자율적 공시체제로의 전환 고려 필요

글로벌 공시기준 요구사항들은 어렵고 복잡하여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조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타율적 공시체제에서 자율적 공시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업의 지속가능한 ESG 추진이 가능하려면 연성규범의 형태로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고, 유관기관 및 기업간의 적극적 소통으로 기업의 자율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함.

2. 국가주도 제3자 검증자격 부여제도를 통한, 자율적 공시체제 유도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되는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하여 ESG 경영 성과를 설명하는데, 지속가능성 관련 ESG 정보에는 정량적 수치인 GHG(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치 외에도 미래 시나리오의 다양한 가정 하에 생성되는 예상결과 등 성질이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지속가능성 관련 ESG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 3 자 검증이 과제임.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공시정보 제 3 자 검증 의무화, 미국 SEC 기후관련 공시강화와 표준화 목적 공시규칙안 GHG(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1 및 2 제 3 자 검증 의무화 검토에 이어, 일본도 제 3 자 검증 기본방향을 검토중임.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검증기준(ISSA) 5000 '지속가능성 보증업무의 전반적인 요구사항' 제정을 추진하여, 2023 년 하반기 공개초안 공표, 모든 이해관계자(보증업무제공자, 정보작성자, 투자자, 기준설정주체, 규제당국 등)와 아웃리치(소통) 등을 실시한 후 2024 년 9 월까지 최종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회계사윤리기준심의회(IESBA)는 지속가능성 보고 및 보증을 위한 글로벌 윤리 및 독립성 기준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⁶. 우리나라도 ESG 보고서 제 3 자 검증기관 적격성 관련 검증자격 부여제도를 국가 주도로 정비한다면, ESG 정보공시를 타율적 공시체제가 아닌 자율적 공시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단순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특정한 투자상담, 권유, 또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KRESG 는 본 보고서에서 제공된 분석, 전망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관하여 그 정확성 또는 예측의 실현여부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본 보고서를 분쟁 등에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KRESG 의 동의 없이 이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6 サステナブルな企業価値創造に向けたサステナビリティ関連データの効率的な収集と戦略的活用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サステナビリティ関連データの効率的な収集及び戦略的活用に関する報告書(中間整理)～開示を超えた戦略的活用への転換に必要な体制整備と経営者及び取締役会の役割”, 経済産業省 企業会計室, 2023.7.18. 75 頁